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표 방법,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서식, 전담기관 지정신고서 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지정서 서식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정함

나.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3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다.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별표로 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11. 15. ~ 12. 11.) 진행중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하려는 자가 제2호의 확인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하려는 자가 제2호의 확인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하려는 자가 제2호의 확인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 요건
1. 시설 및 장비	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1개 이상 갖출 것 나.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보조재 및 실습을 위한 기자재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화장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인력	가. 다음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교육이 가능한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이하 이 표에서 “농업 또는 축산 분야”라 한다)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관리하는 전담운영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설립 연월일	신고 연월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2.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 완료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주요 업무내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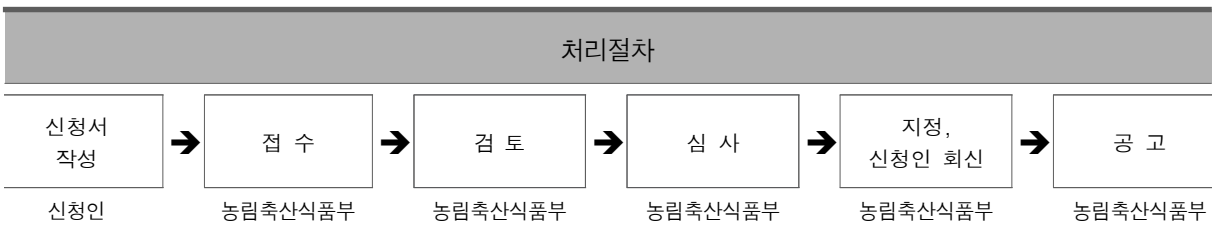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그 밖의 서류(다른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심사	→	지정서 발급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